#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12일,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의원)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1. 산업표준 적부확인의 예외 신설

개정안은 산업표준 적부확인의 대상에서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검토 중인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하며, 적부를 확인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검토 중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산업표준 적부확인 제도는 산업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표준이 적합한지 여부(적부)를 확인하여 기술·시

장 변화 및 국제표준 변동 등에 맞추어 산업표준의 품질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법 제10조[1]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2](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5조[3]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을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현행법 제5조에서는 산업표준안을 작성·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4].

---

1)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3)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4) 다만, 제10조에 따른 적부확인이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 개정·폐지 절차에 대한 필수적 사전 절차는 아니며, 산업표준 개정·폐지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제6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개정·폐

다만, 제10조에 따른 적부확인과 무관하게 특정 산업표준에 대한 개정·폐지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시로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개정·폐지가 가능한데,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특정 산업표준에 대한 개정·폐지가 완료되기 전에 시기적으로 5년 주기인 적부확인 시점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이미 개정·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10조에 따른 적부확인 심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해당 산업표준의 개정·폐지 필요성을 재차 심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5].

이에 개정안은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 적부확인의 대상에서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검토 중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적부확인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

---

지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수시로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개정·폐지가 가능함.

**「산업표준화법」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2024년에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한 날부터 5년'이 도래하여 제10조에 따른 적부확인을 거친 산업표준은 총 3,789건이었으며, 이 중 783건(20.7%)은 제5조에 따른 개정·폐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적부확인 시점이 도래하여 적부확인 심의회를 별도로 개최·심의한 것으로 확인됨.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안의 고시'는 동법 시행령[6]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그 주요 내용, 사유,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등에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는 절차로써, 해당 산업표준의 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내부검토[7]를 거친 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산업표준안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적부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개정안은 적부확인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60일.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30일

7)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표준의 개정·폐지 수요 발생 시 현행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산하의 기술심의회에서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의결로 두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검토를 거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폐지의 내용을 적시한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1.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검토를 요청한 사항

조치로 보임.

## 2.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 ⑤ (생략)<br><신 설>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br>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br>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br>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

현행법 제20조[8]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시판품조사)을 하게 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사(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량 KS[9]인증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시판품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661건, 2022년 635건, 2023년 633건, 2024년 631건 등 매년 약 600여건의

---

8)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였음[10].

KS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실시 현황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조사건수 | 403 | 661 | 635 | 633 | 631 |
| 적발건수 | 205 | 110 | 195 | 258* | 164* |
| 행정처분 | 205 | 110 | 195 | 250 | 156 |
| -인증취소 | 3 | 26 | 7 | 12 | 16 |
| -표시정지 | 24 | 41 | 62 | 62 | 52 |
| -개선명령 | 178 | 43 | 126 | 176 | 88 |

* 2023년 8건, 2024년 8건은 소송, 재심사 등 진행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인증제품 등의 품질 또는 서비스 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나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관련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증받은 자 등으로부터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원활한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임[11].

10) 현장조사는 별도의 계획없이 이슈(민원, 언론 등) 발생 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11)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판품조사나 현장조사는 주로 민원이나 언론보도, 기관(타부처,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의 요청 등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사전에 해당 제품 등의 시험

이에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판품조사나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KS인증제품·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KS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근거 규정 규정을 마련한 타 입법례[12]를 살펴보면, 자료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결과, 계약서류, 세관 제출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제품 또는 생산공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조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등의 자료 제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임.

12) **「식품위생법」**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②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어린지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 제품 수거명령 제도 개선 등

개정안은 제품의 수거 명령 대상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수거 명령 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품 수거 명령 제도 및 이행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표 4]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생략)<br>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신 설> |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현행과 같음)<br><삭 제><br>② ----------기준----------.<br>제21조의2(제품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

| | |
|---|---|
| | 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br>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br>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br>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품 수거를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라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라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⑤ 인증받은자가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br>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br>⑧ 제1항에 따른 제품수거의 명령,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제4항에 따른 보고,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과 보완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2. (생 략)<br>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2조(벌칙) ① ----------.<br>1.·2. (현행과 같음)<br>3. ----------제21조의2제1항---------- |

| | |
|---|---|
| <신 설> | 4.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자 |
| 4.·5. (생 략) |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 <신 설> | ②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신 설> | 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2. ~ 4. (생 략) |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1조[13]제1항에서는 KS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

13)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받은 자에게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더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품 수거명령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이 이루어진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시판품조사나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대상 제품보다 그 결함의 정도가 훨씬 심각[14]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수거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규정 미비로 인해 해당 제품의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명령의 대상(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은 경결함 또는 중결함에 해당되는 반면, 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는 치명결함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수거를 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증제품의 수거 명령 대상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수거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① 제품 수거명령 사실의 공표, ② 이행계획서 제출, ③ 이행결과 보고, ④ 수거명령 대상 제품의 유통 금지, ⑤ 제품 수거 이행현황 점검, ⑥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명령 등 제품 수거명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법률에 신설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제품 수거명령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품 수거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품 수거를 완료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15]

1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하고 있을 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이행결과를 직접 확인·점검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 수거명령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16]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통해 결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거명령 제도의 보다 실질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벌칙 적용 대상에 ① 수거 명령 대상 제품의 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자와 ② 제품 수거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16) 현행법에서는 제품수거 명령의 불이행 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명령 등과 같은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상 인증의 취소나 벌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제품수거 명령의 이행을 독려할 수단이 없는 상태임.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산업표준화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에 ① 제품수거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와 ② 제품수거 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서 새롭게 규정하려는 제품 수거명령과 관련된 절차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 4. 인증의 취소 요건 추가

개정안은 인증의 취소 요건에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②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표 6]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br>1.·2. (생 략)<br>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 |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br>1.·2. (현행과 같음)<br>3. ---------- |

| | |
|---|---|
| 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 |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4. ----------시판품조사·현장조사----------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5. ----------제21조의2제1항----------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2조[17]는 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17)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② 정기심사나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③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④ '현장조사'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와 ②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현행 인증취소 사유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산업표준의 품질 적합성 유지 등을 위해 인증취소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품 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인증취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 3가지 경우를 인증취소 요건에 추가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먼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7조[18]는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시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에도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19조[19]의 인증기관의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와 제20조[20]의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시 인증제품·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인증제품·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기관에 보고·통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표준과 더불어 인증심사기준 또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증 및 결함 판단 여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인증을

---

18) 「산업표준화법」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9)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정기심사 등)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와 관련하여, 시판품조사의 경우에도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민원,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현행법 제20조[21]에 따라 수시로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고,

품질조사 대상 제품의 확보 방식(유통 현장에서 제품 직접 구매 또는 생산공장에서 제고 제품 채취 등)에 따라 사업자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원활한 시판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증 취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경

---

21)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우와 관련하여, 과거 고의로 불량 KS 인증제품을 제조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발생[22]한바 있으나 현행법상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이처럼 '고의로' 불량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그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5. 국가기관 등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 추가 등

개정안은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서비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조달 시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안 제25조 및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증제품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22) "불량 레미콘 납품, 306억 원 챙긴 업체 대표 등 6명 구속" (KBS뉴스, 2017.06.20.)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품·서비스로서----------단체표준제품·서비스를----------. |
|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 4. ~ 18. (생 략) | 4. ~ 1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

현행법 제25조[23]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24]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서비스'[25]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로 규정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

23)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4)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5) 「산업표준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 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서비스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2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7],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8]등 타 입법례를 고려하고,

현행법에 따라 단체표준서비스로 인증받은 서비스는 그 품질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단체표준서비스로 인증받은 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 개정안 제26조는 현행법상의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검정·시험검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대상[29]

---

26) **「협동조합기본법」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8)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9)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삭제

에 「목재이용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이는 「목재이용법」 제20조제3항[30]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과 「목재이용법」간의 법적 통일성을 제고하고 중복 시험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의 절감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 삭제
18. 「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3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7. 기타 사항

없 음.